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51

채 권 압 류 조 서

채 권 자 (채납자)	성 명	고지종합건설	주민등록번호	110111 - 0730344
	주소또는거소	136082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20 보문통광빌딩 201호		
채 무 자	성 명	대한민국(서울북부지방법원)		
	주소또는거소	139705 서울 노원구 공릉1.3동 622		

재산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금2143호와 관련하여 상기 채납자가 대한민국(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판)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회수, 출급 청구권 중 채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채납액은 가산금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2010년 02월 03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내용

년도	납기	세목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
2008	2008-06-30	주민세	4,503,020	281,070	5,953,820	외 20건

위의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기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소 속 :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전화번호 : 02-2133-3468

직: 주무관

성 명: 김수경

접수일자 : 10.02.05
 사건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07금2143
 종류 : 압류통지서
 권리자 : 서울특별시
 채무자 :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사유 : 14,410,550원
 관련사건 : 세금징수과
 해제일자 : 서울특별시

접수일자 : 10.12.31
 사건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10타채49647
 종류 : 추심명령
 권리자 : 김세홍
 채무자 :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사유 : 75,291,432원
 관련사건 : 채무자 코지종합건설
 해제일자 : 2012.06.22

[지급제한 관리자 내역]

성명 :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단체대표 :
 주민/법인번호 : 110111-0730344
 주소 :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 20 보문동통광빌딩 201호

성명 :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단체대표 :
 주민/법인번호 : 110111-0730344
 주소 :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 20 보문동통광빌딩 201호

성명 : 서울특별시
 단체대표 :
 주민/법인번호 :
 주소 :

성명 : 김세홍
 주민/법인번호 :
 주소 : 구리시 수택동 521-56 지하

[관련사건 내역]

관련사건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북부지방법원 07카단3368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서춘섭

[문서건 내역]

접수일자	문서명	발신
08.09.22	기타	성북세무서장
10.02.05	압류통지서	서울특별시
10.12.31	추심명령	김세홍
11.01.10	열람및복사신청	김세홍
12.06.22	해제신청서	김세홍

[송달 내역]

송달생성일자	송달물명칭	송달자	송달일자	송달불능사유
2010.04.12	출급청구안내문	주식회사 코지종합건	2010.04.22	
2012.04.06	출급청구안내문	주식회사 코지종합건	2012.04.19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65호, 2018. 5.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세제과) 02-2133-33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COURT OF KOREA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3368

기본내용

사건번호	2007카단3368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채무자	서춘섭
제3채무자		청구금액	95,439,999원
재판부	제 2 단독	담보내용	10,000,000원
접수일	2007.04.25	종국결과	2007.05.11 인용
수리구분		병합구분	없음
기록보존인계일	2010.04.15		
항고인		항고일	
항고신청결과		해제내용	2010.04.07 해제
폐기여부	기록폐기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결정문송달일	2007.06.05	확정일	

담보내용

담보금	담보제공일
현금 3,000,000	2007.05.08
공탁보증보험증권 7,000,000	2007.05.09

최근기일내용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 용
2010.04.06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해제신청서 제출
2010.04.07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해제신청서 제출
2010.04.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제증명
2010.05.10	압류권자 성복세무서 해제증명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내용

일 자	내 용	결 과
접수된 보정명령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사건내용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7994	신청사건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결정문송달일	확정일
채권자	1.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영숙	2007.05.16	
채무자	1. 서춘섭	2007.06.05	



대한민국 법원
COURT OF KOREA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3368

기본내용

사건번호	2007카단3368	사건명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채무자	서춘섭
재판부	제 2 단독		
접수일	2007.04.25	종국결과	2007.05.11 인용

진행내용

전 체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07.04.25	신청서접수		
2007.04.27	담보제공명령		
2007.04.27	채권자1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에게 담보제공명령등본 발송	2007.05.02 도달	
2007.05.11	채권자1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에게 결정정본 발송	2007.05.16 도달	
2007.05.11	북부등기소에게 기입등기(등록)촉탁서 발송	2007.05.15 도달	
2007.05.31	채무자1 서춘섭에게 결정정본 발송	2007.06.05 도달	
2010.04.06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해제신청서 제출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0.04.07	채권자 주식회사 코지종합건설 해제신청서 제출		
2010.04.09	등기소 북부등기소에게 말소등기(등록)촉탁서 발송	2010.04.12 도달	
2010.04.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해제증명		
2010.05.10	압류권자 성복세무서 해제증명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